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0777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30799(중복)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2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박성신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[목록1]2019.10.31.근저당 권 [목록2]2025.4.10.근저당 권		배당요구종기	2025. 7. 7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입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이연지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5.04.17		
	402호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5.03.25~	25,000,000	500,000	2025.04.17	2025.04.17	2025.5.19.
<p><비고>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 <p>-일괄매각</p>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30777

[물건 1]

-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604-5
대 359m²
-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604-5
[도로명주소]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22-10
위 지상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(다가구주택)
1층 18.25m²
2층 199.49m²
3층 208.49m²
4층 197.38m²

감정평가액		1,923,471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23	1,923,471,000	192,347,100
2회	2026.05.04	1,346,430,000	134,643,000
3회	2026.06.15	942,501,000	94,250,100
4회	2026.07.27	659,751,000	65,975,100
-일괄매각			